

조선시대 울산지역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신용일
(동아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www.kci.go.kr

조선시대 울산지역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신용일
(동아대학교)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다문화의 이론적 개념과 의의
 - 2.2. 다문화정책의 선행연구
3. 조선시대 울산지역 다문화정책 연구
4. 결론 및 시사점

<Abstract>

Sin Yong Il. 2019. 7. 1.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Policy in Ulsan during the Chosun Dynasty,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4, 151-177. Modern Northeast Asia is experiencing rapid social changes due to the rise of the large Chinese economy along with the economic chrysanthemum of Japan and the high economic growth of Korea. This led to urbanization, which caused many social problems due to urbanization, and the representative phenomenon of urbanization can be considered as low, childbirth, and elementary and aging society.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dustry is represented by expansionism, which leads to the departure of rural areas, and the population outflow of rural areas has accelerated the low,

childbirth, and the early and aging society. Urban area also has positive effects o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but various social problems and polarization problems have also been mass-produced. Industrial polarization means entry into multicultural society.

Ulsan area is a region where multicultural families have lived in a residential village since the Chosun Dynasty. The records of Ulsan's family register chiefs include Ulsan Dongmyeon Nongsori, Yudeungpori and Nammyeon Onyangri, and lived for generations. The records of Ulsan area called wildlings and dwarfs who were naturalized in Chosun as 'Hyanghwa', which is the current multicultural people. It is a record of the beginning of multicultural policy. In general, when wildlings are naturalized, the government has paid free of charge for houses, farmland, farming, and necessities, and sometimes gave them a rice paddy. We have been exempted from taxes from land for three years, or exempted from the ministry for 10 years. These measures are the policy tasks we should engrave in multicultural society.(Dong-A University)

[Key words] Chosun Dynasty, Multicultural Policy, Ulsan, Single Culture, Single Nation, Naturalization policy, Ulsan famil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동북아시아는 일본의 경제 대국화와 함께 한국의 고도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고, 이어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인하여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천재교육, 2015). 이는 도시화로 이어져 도시화에 따른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도시화의 대표

적인 현상으로 저 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꼽을 수가 있을 것이다. 산업의 발달 과정은 팽창주의로 대변되어 지는 도시화로 이는 농촌 지역의 이탈로 이어졌고, 농촌지역의 인구 유출은 저 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도시지역 또한 산업화의 과정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다양한 사회문제와 양극화라는 문제도 양산되었다. 산업화의 양극화는 3D¹⁾업종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업종의 기피현상으로 외국인근로자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출은 저 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이어져 결혼이민자 즉, 소위 국민배우자로의 증가를 가져와 한국사회의 다문화인구 유입은 2016년 6월 체류외국인이 2백만 명을 넘어선 2,001,828명 이후 다문화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19년 4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2,430,589명²⁾으로 이는 2019년 4월말 현재 한국의 전체 인구 남자 25,867,727명, 여자 25,969,036명 합계 51,836,763명³⁾으로 다문화 인구는 4.7%에 해당되어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고 할 수가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통계자료실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외국인장기등록자는 2019년 4월 30일자로 1,259,152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는 447,605명, 단기체류는 723,832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44.82%인 1,089,442명(한국계 713,914명 포함), 베트남 8.90% 216,822명, 태국 8.05% 195,633명, 미국 국적 6.51% 158,181명, 일본 3.25% 79,026명 우즈베키스탄 2.97% 72,307명, 러시아 2.52% 61,322명 필리핀 2.43% 59,034명 순이고, 외국인 유학생은 170,470명으로 이중 한국어연수생 58,165명이었다.

1)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직업의 머리글자로 1980년대 이후 소득 수준 및 생활수준이 대폭 향상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일하기를 꺼려하는 업종을 지칭하는 용어다. 주로 노동집약적이고, 복지후생이 낮은 중소기업 등이 많이 포함된다(지은실, 2009).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통계자료실, 통계월보 2019년 4월호 (http://www.immigration.go.kr/viewer/skin/doc.html?rs=/viewer/result/bbs/227&fn=temp_15556501990321001, 검색일 2019년 06월 15일).

3)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9년 4월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검색일 2019년 06월 15일).

국민의 배우자는 161,458명이며, 외국인장기등록자(1,259,152명)의 지역별 현황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7629,114명(61.08%)이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 225,370(17.90%), 충청·강원권 145,492명(11.55%), 제주·호남권 113,799명(9.04%)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자격별로는 재외동포(F-4) 452,251명, 비전문취업(F-9) 276,989명, 방문취업(H-2) 251,944명, 사증면제(B-1) 235,104명, 단기방문(C-3) 242,040명, 영주(F-5) 145,443명이었고 기타 826,818명이었다.

2019년 4월 현재 장기체류 등록외국인 1,259,152명 중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9,983명으로 이를 다시 지방자치별로 분류하면 울주군 7,166명, 남구 5,066명, 동구 3,187명, 북구 2,402명, 중구 2,162명이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5대 광역시의 인구비율로 보면 제일 높은 지역이다.

특이한 사항으로 불법체류외국인 2017년도 말 기준으로 외국인 총 체류자 2,180,498명에 불법체류 외국인 251,041명, 2018년도 2,367,607명 중에서 355,126명, 2019년 4월 30일 기준으로 2,430,589명 중 357,106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급증하게 불법체류자가 늘어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정된다.

울산지역에는 조선시대부터 다문화가족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거주하던 지역이다. 정석중(1972), 임학성(2008), 경혜영(2013)과 이옥빈(2015) 등에 의하면 “울산부 호적대장(蔚山府 戶籍臺帳)⁴⁾”의 기록에 울산 ‘동면 농소리(현 북구 농소동 일원)’, ‘유등포리(동구 방어진 일원)’와 ‘남면 온양리(울주군 온양읍 일원)’에 집성촌을 이루고 수대에 걸쳐 살았다는 기록에는 울산지역이 조선에 귀화한 야인 및 왜인을 ‘향화(向化)⁵⁾라고 불렀는데, 현재의

4) 울산부 호적대장(蔚山府戶籍臺帳)은 규장각에 1609년(광해군 1)에서 1904년까지의 장적(帳籍) 59책이 소장되어 있다. 조선시대 때는 3년마다 전국의 호구(戶口)를 행정구역별로 조사하여 호구의 수와 이들의 직역(職役: 신분)·성(性)·연령 등을 파악하고, 또 그 동안의 출생·사망·이주·도망 상황 등이 기록 파악되어 있다.

5) 향화(向化) : 다른 나라에 정복당한 백성이 그 나라 임금의 덕에

다문화 인(人間, Human)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정책의 시초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야인이 귀화하면, 정부는 집과 농토, 양식, 생필품 등을 무상으로 지급했으며, 벼슬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3년간 면제해 주거나, 부역을 10년간 면제하는 등 은혜를 베풀었다(신형석, 2010).

우리는 오랜 역사동안 단일문화를 유지하여 단일민족이라는 명분으로 5천년 역사 속에서 단군신화를 배경으로 한국사회를 일궈왔다. 하지만 한민족의 태생과정은 고조선과 고구려, 삼국시대를 이어 오면서 다문화 인들은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중앙정부의 정책들은 한민족이라는 명분으로 사회를 결집시키려 했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울산지역은 조선의 특별 관리지역인 삼포(三浦)⁶⁾지역은 다문화 인들이 다수 거주한 지역으로 울산부 호적대장(蔚山府 戶籍大帳)을 참고하여 울산지역의 조선시대 다문화정책에 대하여 연구하고, 기존의 연구를 재정립하여 현재의 다문화정책과 비교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특히, 정석중(1972), 임학성(2008), 경혜영(2013)의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들을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 I 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가 지향하는 조선시대 다문화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배경 및 목적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II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다문화의 이론적 개념과 의의와 다문화정책의 선행연구를 변형하였다. 제 III 장에서는 문헌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성공적인 요소들을 도출하여 본 연구를 수행

감화되어 그 나라 백성이 됨.

6) 조선 전기 일본인들의 왕래와 거주를 허가하였던 동남 해안의 세포구(三浦口)로 지금의 부산진(釜山鎭)에 해당하는 동래의 부산포(釜山浦, 또는 富山浦), 지금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에 해당하는 웅천(熊川)의 제포(齊浦, 또는 乃而浦내이포), 지금의 경상남도 방어진과 장생포 사이에 해당하는 울산(蔚山)의 염포(鹽浦)를 말한다(원경렬, 1995).

하고자 했다. 제IV장에서는 결론으로 연구의 요약과 함께 조선시대 다문화정책에 대하여 현재의 다문화정책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자 하였다.

울산은 한국의 고도 경제 성장의 표본이기도 한 지역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1962년에 울산지역을 울산공업단지로 지정하여 건설함에 따라 한국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성장한 지역이다.

울산은 공업도시로서 가장 젊은 도시에 속하고 6대 광역시 중에서 수도권인 인천을 제외하면 인구대비 다문화인구가 1.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지역으로 연구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의 이론적 개념과 의의

다문화는 하나의 사회 안에서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여 무질서하게 섞여서 한 사회를 이루고 생활하며, 다양성을 이루는 사회를 말한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를 하나의 사회에서 이루기 위해 같이 공유하고 또 다른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이전에는 없던 것을 새롭게 생각하며 공유하여 이루거나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기 위한 정책을 말할 것이다. 다문화주의의 이념은 1970년에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우리나라도 1980년 말 이후에 다문화 가구 인구와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다문화상은 가구조사와 인구 외국인 동태조사에서 그 맥을 짚어 볼 수 있다(설기환 외(2018)).

오랜 역사동안 단일문화를 유지하던 한국사회는 1990년대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적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이 폭발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점차 다인종(multi-ethnic), 다문화(multi-cultural), 다민족(multi-national)으로 구성된, 이른바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 7))로 이동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란 한 사회 내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해지는 현상(한승준, 2011)으로 정의했고,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이주민들에 의한 다양한 문화가 한 사회에 유입되어 형성되는 사회(고병갑, 2012)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서구 국가들의 다문화사회 형성배경과 달리 2000년대 들어 급증하기 시작한 결혼이주여성들 중심의 다문화가족이 형성되면서 기존의 단일문화에 다른 문화들이 혼재되는 현상(정장엽·정순관, 2014)을 초래하였다. 이는 한국 특유의 다문화사회 형성에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써 다문화정책이 곧 다문화가족정책으로 이해되어 실질적인 제도적 차원에서 또한 다문화가족정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왔다(심익섭·남영희, 2015).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단일민족, 혈통주의를 강조하면서 사회의 통합과 결속을 강조하여 왔으나 이제는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인종의 유입에 따른 언어·문화·종교적 갈등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의 비용이 증가하는 국면을 맞이하였다(이상주·전미숙, 2016).

2.2. 다문화정책의 선행연구

임동진·장우영(2012)은 다문화정책에 대한 국내의 주요 선행연구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 번째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장 연구되는 영역으로, 다문화정책의 형성, 수단, 유형화, 전략에 관한 연구로 보았고, 이에 대하여 유

7) 보통 전체인구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이 5%를 상회할 때 다문화사회라고 분석한다. 따라서 수치상 현재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라고 분석하는데 무리가 있으나,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기도 하다(안전행정부(2012), 정성영 외, (2014), 심익섭·남영희(2015) 재인용).

의정(2014)은 다문화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다문화 법제에 대하여 한국과 서구의 정책·법 사례 비교하면서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국가들도 다문화정책에 여러 차례 변화를 경험했고, 시행착오를 통해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것과 같이 다문화정책의 경향은 이주에 대한 법은 강화되는 한편,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그 자녀의 학습권과 기본적인 복지는 제한적으로나마 보장하고 있다는 것과 다문화정책 사례들의 변화 과정과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비교하였다. 최홍엽(2018)은 국제노동이주의 규율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서 전 지구 이주협정은 정부 간 협의와 교섭을 포함하여, 다음의 3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의 협의단계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였으며, 두 번째 평가단계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였고, 세 번째 정부 간 교섭단계는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강휘원(2007)은 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 집행 장애요인과 통합적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있고, 홍기원(2007)은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정책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전영평(2008)은 소수자의 유형을 구분하며 분야별 대응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무현(2008)은 소수자정책을 정책수단의 관점에서 각각의 특징과 그 적용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원숙연(2008)은 다양한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에 대응하여 다양한 다문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상기(2009)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성훈(2010)은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정광호 외(2009)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과정 및 방법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한승준(2009)은 지자체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고 있다. 박진경·원숙연(2010)은 중앙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다문화정책 정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진보적 이념, 시민적 요인, 공무원의 다문화 접촉 경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혁근(2010)은 정부부처 및 사업 간의 비효율적 업무중첩과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정책조정체계를 제안하였고, 정명주(2010)는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이 동화주의 혹은 다문화주의를 논의하기에 앞서 실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다문화정책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 분야의 연구는 특히 최근에 다뤄지는 주제로 법학,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비환(2007)은 국내의 소수인종·문화집단들을 사회통합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가능성과 시민권 개념을 모색하고 있고, 한건수·설동훈(2007)은 이민자의 사회통합정책 수단을 분석하고 다양한 집단의 다문화정책 수요를 평가하고 있다. 박채복(2008)은 독일의 이주정책과 이주자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분석하여 우리나라 외국인 사회통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해성(2009)은 이주외국인 또는 소수집단의 동참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기초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김명성(2009)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라 적극적 다문화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차용호(2009)는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성순(2010)은 사회통합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서의 주요 쟁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김태원(2010)은 우리나라 사회통합방안들이 동화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문화정책에 대한 국외의 주요 선행연구로는 다문화주의의 개념정의에 관한 연구(Rex & Singh, 2003; Jacobs, 2004; Siebers, 2004; Tiryakian, 2003; Berry & Kalin, 1995),⁸⁾ 다문화주의의 유

8) 실제로 다문화주의의 개념은 역동적이고 다차원적이다. Rex & Singh(2003)은 다문화주의의 개념을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단순한 국제이민에서부터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인해 소외된 이민자 집단까지 지난 60여 년간 그 개념이 다양하게 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Tiryakian (2003)은 다문화주의를 학문적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영역, 인구학적 개념, 심리학적 개념, 정치 행정적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문화주의의 인구학적(demographic) 개념은 사회의 다양한 인종적 구

형화와 전략에 관한 연구(Berry, 2001; Alexander, 2001; Castles & Miller, 2003; Banding & Kymlicka, 2006)⁹⁾, 등이 있다.

마지막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국가들의 다문화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해외 다문화정책의 비교분석 및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다. 이종열(2008)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다문화정책을 민주주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고, 주효진(2008)은 이주의 성격이 비슷한 대만,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의 다문화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한승준(2008)과 박단(2009)은 프랑스가 채택하고 있는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하고 있고, 최현실(2009)은 상호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다민족을 통합한 중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 공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장진숙(2010)은 비교적 선진이민사회의 경험이 충분한 캐나다와 우리와 같은 단일민족국가로서 사회문화적 변형유형이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다문화주의 통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성(poly-ethnic composition)을 의미하고, 심리학적 개념은 한 사회에서 인구구성에서 문화적으로 이질성의 정도를 수용하거나 지지하는 ‘정치적인 이념(political ideology)’와 관련된 태도(attitude)로 정의하고 있고, 정치·행정학적 개념은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개념으로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에 관한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임동진·장우영(2012) 재인용).

9) Berry(2001)는 다문화주의를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고립(marginalisation) 전략으로 구분하고 있고, Alexander(2001)는 이민자를 수용하는 방식을 동화(assimilation), 외국계국민(hyphenation),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구분하고 있고, Castles & Miller(2003)는 이주민 수용방식을 차별·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동화주의모형(assimilation model), 다문화주의모형(multiculturalism model)으로 구분하고 있고, Banding & Kymlicka(2006)는 다문화정책을 강도에 따라 강한 다문화주의, 온건 다문화주의, 약한 다문화주의로 구분하고 있다(임동진·장우영(2012) 재인용).

3. 조선시대 울산지역 다문화정책 연구

외국인의 내투(來投, 스스로 와서 항복함) 및 귀화(歸化)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정책적으로 귀화인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왕조 때부터 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려 때의 귀화정책은 주로 한족(漢族)¹⁰⁾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고, 북방 야인의 귀화는 주로 변계(邊界) 지역에 국방인력을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박옥걸(1996), 임학성(2008)). 북방 야인에 대한 귀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왕조의 등장 이후였다(임학성(2008)).

이찬옥(2010)에 의하면 이유타국¹¹⁾의 왕녀인 허황옥(許黃玉)은 아들 10명을 낳았는데, 맏아들 등(登)은 김씨로 정통을 잇게 하고, 두 아들은 허씨로 사성(賜姓, 임금의 공신 등에게 성(姓)을 내림) 하였으며, 나머지 일곱 아들은 불가(佛家)에 귀의하여 하동칠불(河東七佛: 경남 하동에 칠불사가 있다)로 성불하였고 김해 김씨는 부성(父姓), 허씨는 모성(母姓)을 계승했다.

고려 태조 왕건은 개국 공신들과 지방 토호(土豪)세력들을 통합 관장하기 위해 전국을 군·현의 개편작업과 함께 성씨를 하사하면서 우리나라의 성씨를 체계화하게 되었다. 고려 중엽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한 성씨(姓氏)의 사용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더욱 확산되었고, 일부 천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을 가지게 되었다(이수환·이병훈, 2009).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종래의 신분 계급이 타파된 것은 성의 일반화를 촉진시켰고, 양반과 상민의 신분 격차가 없어지자 너나없이 양반임을 주장하게 되고 매관매직은 물론 족보까지 사교파는 행위가 성행되었다(이찬옥, 2014). 신분제 폐지와

10) 중국 본토에서 예로부터 살아온 종족으로, 중국의 중심이 되는 민족을 지칭한다.

11) 아유타(阿踰陀)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갠지스강의 지류인 고그라강 연변에 있다.

함께 1909년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면서 누구나 본관(本貫)과 성을 갖게 되었는데¹²⁾, 조선시대에는 귀화인 우대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되면서 귀화인에 대한 포용, 결혼정책, 강제이주, 인질책 등으로 주로 북방경계를 지켜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김경록, 2012).

조선시대 대표적인 귀화 성씨로는 여진(女真人)인¹³⁾ 이지란과 일본인 사야가(沙也可)를 들 수가 있다. 이지란은 태조 이성계를 도와 개국에 많은 공을 세운 여진인 동두란(修豆蘭)은 이지란(李之蘭)이라는 성명을 받아 청해 이씨(靑海 李氏)의 시조가 되었고, 임진왜란 때 조선에 귀화한 왜장 사야가(沙也可)는 정유재란과 병자호란에 큰 공을 세워 김충선(金忠善)이라는 성명을 받아 우록 김씨(友鹿 金氏 : 뒤에 사성(賜姓)하여 김해 김씨)의 시조가 되었다(황교익 2002: 임선빈 2009).

12) 1909년 구한말, 당시 대한제국을 사실상 지배한 일제는 “민적법”을 시행했다. 전 국민이 성씨를 가지게 한다는 명분이었다. 일제는 철저하게 대한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누구나 본인이 쓰고 싶어 하는 본관과 성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신청 받았는데 “김, 이, 박, 최씨”가 당시 무(無) 姓氏(성씨) 층에게 인기가 많아 자신의 성으로 삼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자기가 모시던 주인의 姓氏(성씨)를 택한 경우도 있고,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성씨를 택한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는 남의 姓氏(성씨)를 갖다 쓰고 있다. 일제가 당시 성씨를 갖도록 한 3가지 이유는 첫째, 당시 의병활동은 양반가의 인물들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양반 상놈의 신분 차별이 없으면 단결력이 약해지고 활동에 저해가 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천민 층을 양성화시켜 세금을 수탈하기 위해 이들을 모두 호적에 올려 수탈을 증대하기 위함이며, 셋째, 대한제국의 국민 모두를 문서(호적)에 등록하여 전 국민을 한눈에 지배하고 감시가 용이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1939년 창씨개명으로 이어졌고, 1946년 10월 23일 미군정 제122호로 조선성명복구령(朝鮮姓名復舊令)이 공포되어 일본식 창씨개명은 무효가 되었다(강대의 칼럼, 2019).

13) 여진은 당시 백산흑수(白山黑水, 백두산과 흑룡강)지역에 살던 모든 민족의 범칭(汎稱)이다. 여진이란 이름은 원래는 주리진(朱里眞)이었는데 이것이 와전되어 여진이 되었다. 여진족은 말갈족이라고 불려왔으며 고려와 발해에 오랫동안 복속되어 있었다. 또한 여진족으로 명칭이 변했을 때도 고려와 조선의 수차례 걸친 여진 정벌로 여진족은 고려와 조선에 조공을 바치며 복속되어 있었다. 여진족은 만주족으로 명칭이 변한다.

단일민족, 단군의 자손이라는 한국인의 일반적인 관념과 달리 한국인의 정체성 속에는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도 한국인의 순혈주의와 민족주의의 신화는 다문화 시대를 맞아 변화하고 있다(이지홍 박현숙, 2011). 한국인의 자긍심은 단일민족이라는 믿음보다는 한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조화와 포용, 공존이라는 정신적 유산이었다(이찬옥, 2014 p. 271). 하지만 현실은 조선시대에도 귀화인들이 한반도에서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김성춘을 이루고 생활하였다는 사실의 일부가 울산지역의 문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삼포(三浦)지역은 조선시대 한반도의 개방을 통하여 무역거래지역이기도 하다.

1609년도 울산호적에서 확인된 귀화 야인은 남자 36명과 여자 20명으로 총 56명이 호적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1609년도 울산호적 본문에서 확인된 귀화 野人(야인) 수>

지역	남자				여자				計
	計	老	壯	弱	計	老	壯	弱	
읍내리	6	0	6	0	5	0	5	0	11
동면 농소리	16	0	13	3	11	0	11	0	27
동면 유등포 리	4	1	3	0	1	0	1	0	5
남면 온양리	10	2	5	2	3	0	2	1	13
計(계)	36	3	28	5	20	0	19	1	56

비고 老(노)는 61세 이상, 壯(장)은 16-60세, 弱(약)은 15세 이하의 연령을 말함
출처: 임학성(2008). p. 104를 참고로 인용하여 저자가 재구성 함.

<표 1>에서 시대적인 사상을 감안하여 연령층별 분포를 보면 남녀 모두가 弱(약 15세 이하) 연령층이 남자 5명과 여자 1명은 21건의 혼인관계 중에서 부부 한 쌍 당 0.23명의 자녀를 가졌다는 것. 즉, 부부 넷 쌍 당 1명의 자녀를 가졌다는 극히 적게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 가족관계와 혼인관계 등을 분석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1609년 울산호적에서 확인되는 귀화 야인 가구>

No	면리명	戶首(호수)				妻(처)				食率 (식솔)
		이름	연령	본관	특기 사항	이름	연령	본관	특기 사항	
1	동면 농소리	이문산	35	대원 월강	4조 향화	소사	26	대원	4조 향화	-
2		이윤석	34	대원 월강	4조 향화 1607년 도망 No 11호의 제	소사	41	대원	4조 향화	-
3		금융택	43	대원	4조 향화	소사	39	대원	4조 향화 No9·10호의 자	노 1명 (22세)
4		금융장	53	대원	4조 향화 1607년 도망	소사	47	대원	4조 向化 No8·9·10호의 매	-
5		안북	34	혹룡 강	4조 향화 1607년 도망 No 7 호의 형	소사	23	혹룡 강	4조 향화 No8·9·10호의 매	남(향화) 1명(17세)
6		김막동	48	대원	4조 향화	소사	50	대원	4조 향화 No8·9·10호의 매	자 1명 (15세)
7		안수	28	대원	4조 향화 No 7 호의 제	순개	27	홍해	사비(조선인)	-
8	동면 유동포리	김병부	47	대원	4조 향화 No 9, 10호의 형	소사	42	혹룡 강	4조 향화	子 1명 (14세)
9		김유세	38	대원	4조 향화 No 8, 10 호 의 형제지간	소사	36	大元	4조 향화 No 3 처의 매	子 1명 (15세)
10		김중원	35	대원	4조 향화 No7·9 호의 제	소사	31	大元	4조 향화 No 3 처의 매	-

No	면리명	戶首(호수)				妻(처)				食率 (식솔)
		이름	연령	본관	특기 사항	이름	연령	본관	특기 사항	
11		이윤부	39	대원	4조 향화 1607년 도망 No 2의 계	소사	40	大元	4조 향화	-
12		김돌복	19	흑룡강	4조 향화	소사	20	대원	4조 향화 No 8의 여	-
13		김용경	46	흑룡강	4조 향화 표기 무(없음)	소사	46	흑룡강	양녀	-
14		이석노	65	흑룡강	4조 향화 표기 무	소사	54	경주	양여(조선인)	전처자1명 (18세)
15		홍수	43	대동강	4조 향화 표기 무 No. 39 10의 남매기간	소사	43	-	양여(조선인)	-
16		곽희광	50	현풍	조선인	소사	35	흑룡강	3조 향화 No 20의 여	비 2명 (48, 25세)
17		손덕산	37	대원	4조 향화	?	39	피양	조선인여자녀	자 1명 (14세)
18	남면은양리	김삼건	67	흑룡강	4조 향화 No 19 호의 자	내은비	68	피양	양녀(조선인) 혜척의 여	子 (향화) 2명 (35, 29세), 자부 1명
19		김은금	?	흑룡강	4조 향화 No 18 호의 부	북대	31	-	사비(조선인)	여 (사비) 1명 (11세)
20		김복수	61	흑룡강	4조 향화 표기 무 No 16 처의 부	소사	55	흑룡강	-	-
21		김김이	55	흑룡강	4조 향화	-	고	-	-	자 2명 (25, 13세)

참고

4조 향화(4組 向化) : 부(父, 아버지), 조(祖, 할아버지), 증조(曾祖, 아버지의 할아버지) 즉, 4대째부터 이다.

소사(召史) : 조선시대에는 성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였고, 성을 가진 과부를 점잖게 이르던 말로 양민의 아내나 과부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의 용어

로는 돌상으로 표현되는 언어이다.

순개(順介) : 조선여인의 실제 이름이다.

내온비(內隱非) : 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닌 동거인을 지칭한다.

해척(海尺) :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복대(卜代) : 복씨 성씨를 이르는 말이다.

고(故) : 사망을 뜻한다.

식솔(食率) : 자신을 제외한 식구를 말한다.

출처: 임학성(2008). p. 124를 참고로 인용하여 저자가 재구성 함.

조선시대에는 산아제한(産兒制限)을 실시한 사회가 아니었기에 임학성(2008)은 다산다사(多産多死, 많이 출산하고 많이 죽음)의 사회로 <표 2>와 같이 자녀의 적은 이유는 귀화 향화인들이 의도적으로 산아를 제한하거나, 영 유아를 유기(遺棄)·살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영 유아인구(특히 여아)의 미등록 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실제로는 자료에 나타난 자녀 즉, 식솔(또는 식구)이 자료보다도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조선시대의 임진왜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족구성원의 일탈(사망, 인질, 납치 등)이 극심했다는 것이다.

1609년도 울산호적에는 읍내리(邑內里), 동면 농소리(東面 農所里)·유등포리(柳等浦里), 북면 범서리(北面 凡西里), 남면 대대여리(南面 大代如里)·청량리(靑良里)·온양리(溫陽里), 서면 웅촌리(西面 熊村里) 등 전체 8개면이 등재되어 있는데, 귀화 야인들은 읍내리, 농소리, 유등포리, 온양리 4개의 마을에서만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다에 가까운 지역으로 주로 어업에 종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17세기 초기 조정에 보고한 귀화 호인(胡人, 만주 사람)들의 근황으로 바닷가에 살면서 어업에 의존하는 자들이 많아 걱정거리가 되고, 해서로부터 경기, 호남, 호서의 바닷가 여러 마을에 이르기까지 없는 곳이 없었다. 그 중에도 호남·호서에 더욱 많아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으면서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드는 자가 날로 늘어나 배가 2백여 척에 이르고 해로에 익숙하여 배를 부리기

를 말 부리듯 하여 조선 사람들이 미치지 못할 지경이라고 조정에 보고했다. 이현희(1966)에 의하면 비변사(備邊司)¹⁴)에서 아뢰기를, 귀화한 호인들이 여러 도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같지 않아 혹은 바닷가에 살면서 고기잡이로 생업을 삼기도 하고, 혹은 내륙에 살면서 농사와 수렵(狩獵)으로 생활하면서 자손을 많이 낳아 그 무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光海君日記 권 80, 6년(1614) 7월 을해조, 이현희, 1966 재인용)로 보고하고 있는 것은 울산지역뿐만 아니라 조선 전역에 걸쳐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실제로 거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1609년도 울산호적에서도 해산물을 업으로 삼는 해척(海尺,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의 딸과 혼인한 귀화 야인(후손)이 거주했고, 온양리에 거주한 김삼건 67세의 경우 온양리 266번째로 등재되어 있는데, 263번부터 281번까지에 등재된 것으로 볼 때 김삼건씨가 거주한 마을이 어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엄정용, 2002).

또한 엄정용(2002)에 의하면 울산지역에서 귀화인들의 점유율을 보면 인구수로는 전체 주민 3,249명의 1.4% 정도이고, 가구 수로는 1,130호의 1.9% 정도가 귀화인들이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14) 조선 중·후기 의정부를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총괄한 실질적인 최고의 관청으로 조선의 정치체제는 왕권과 의정부·육조(六曹)·삼사(三司 : 홍문관·사헌부·사간원)의 유기적인 기능이 표방되는 체제였다. 의정부가 정책조정 기관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리면 육조가 행정 실무를 집행하고, 삼사(三司)가 권력 행사에 견제 작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군사 업무는 원칙적으로 의정부와 병조 사이에서 처리되어야 하였다.(한국전신문화연구원, 1991).

<표 3 1909년도 울산지역 거주 귀화인 현황>

구분	울산지역 전체		귀화인 현황			
	인구수	호수(가구)	인구수	점유율	호수	점유율
동면 용소리	767	237	27	3.5%	12	5.1%
동면 유등포 리	556	169	5	0.9%	3	1.8%
북면 범서리	144	53	0	0	0	0
남면 대대여 리	324	114	0	0	0	0
남면 청량리	241	79	0	0	0	0
남면 은양리	950	379	13	1.4%	6	1.6%
서면 웅촌리	267	99	0	0	0	0
계	3,249	1,130	45	1.4%	21	1.9%

참고 읍내리는 인구수를 파악할 수 없어 제외함

출처 : 업정용(2002), 기유식년(1609) 울산부 호적대장을 참고하였고, 임
학성(2008)의 1609년도 울산거주 귀화야인의 점유율을 참조하여 재
구성하였다.

조선시대에서는 인구의 이동을 가능한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는 농업 생산력을 기초로 한 자급자족의 경제체제로 안정적인 농
촌에 경제를 위해 이동의 억제가 필요했고, 인구는 곧 국가의 세원
이었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거주지를 옮기는 전출지역과
전입지역의 최고 관리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이주가 가능했기 때문
이다(립학성, 1990). 일반 백성들의 거주지 이동은 새로운 지역
에서의 생계는 양반사회와는 다르게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이 시기

의 도망은 현재 거주 지역에서 다른 거주지로의 이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귀화인들의 정착을 위해 조선 여인과 혼인정책을 장려하였다(이현희, 1966). 특히 양인(良人)¹⁵⁾ 신분의 부모와 공·사·비(私婢) 신분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여자를 귀화인의 혼인 대상으로 삼도록 하였다(세종실록 권80, 20년(1438) 1월 계축조; 임학성, 2008).

조선정부는 귀화인들에게 직역(職役)의 조건은 어떠한 조건이었는가에 대하여 이현희(1966, 300-315)는 공로가 있거나 무예가 뛰어난 귀화인에게 무관직을 부여했고, 귀화인 및 그 자손들을 군적에 편제하여 군역을 지게 하였다. 귀화 자손에게도 군역을 다하도록 한 명분과 취지는 조선 백성과 동일하게 대우를 하였다(성종실록 권282, 24년(1493) 9월 임인조; 임학성, 2008). 이에 귀화인과 그 후손에게 직업을 갖게 하였고, 이를 호적에 기재하게 하였으나, 대부분의 호적에는 직역을 기재하지 않았고, 향화(向化)로만 기재하여 조선시대의 신분의 질서 내에서 위격(位格)을 판별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면에는 결국 동화하지 않은 귀화인들과 동화시킬 수 없는 조선인과의 입장에서 차별이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귀화인들의 경제적인 면면을 살펴보면, 가옥과 농토는 물론이고 노비·농우(農牛)·의복·식량 등을 지급하는 경제적 수무 회유(綏撫 懷柔, 편안하게 하고 어루만져 달래고, 회유함) 정책을 실시하였다(이현희, 1966). 조선의 국왕을 어진 정치 흠모하여 명령이나 의사에 복종한 귀화인을 생면부지의 지역에 정착하려는 귀화인에 대한 명분과 인본적인 양 측면에서 은혜를 베푸는 조치였다. 이어 조선으로부터 받은 가옥과 농토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지만, 자손 대에서는

15) 조선시대 양반과 천민 사이의 중간 계층을 말한다.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었다(경국대전 권3; 이현희 1966, 315-325).

조선 정부가 취한 귀화인들에 대한 조치는 향화하기를 포기하고, 야인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일반 조선의 백성보다도 더 나은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주어졌다는 것은 조선 시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는 다문화정책에서 우리 선조들이 행한 향화인 즉, 다문화인들에게 행한 조치들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근대 동북아시아는 일본의 경제 대국화와 한국의 고도 경제 성장과 함께 거대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세계는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 곧 도시화로 이어져 도시화에 따른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한 도시화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저 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꼽을 수가 있다. 산업의 발달 과정은 팽창주의로 대변되어 지는 도시화로 이는 농촌지역의 이탈로 이어졌고, 농촌지역의 인구 유출은 저 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도시지역 또한 산업화의 과정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다양한 사회문제와 양극화라는 문제도 양산되었다. 산업의 양극화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했다.

울산지역은 조선시대부터 다문화가족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거주 하던 지역이다. 울산부 호적대장(蔚山府 戶籍大帳)의 기록에 울산 동면 농소리(현 북구 농소동 일원), 유등포리(동구 방어진 일원)와 남면 온양리(울주군 온양읍 일원)에 집성촌을 이루고 수대에 걸쳐 살았다는 기록에는 울산지역이 조선에 귀화한 야인 및 왜인을 ‘향화(向化)라고 불렀는데, 현재의 다문화 인(人間, Human)이다. 다문화정책의 시초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야인이

귀화하면, 정부는 집과 농토, 양식, 생필품 등을 무상으로 지급했으며, 벼슬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3년간 면제해 주거나, 부역을 10년간 면제하는 등 은혜를 베풀었다.

조선왕조 시대를 살펴보면 북방의 방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여진족들을 회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향화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많은 다문화 인들이 조선으로 귀화하여 정착하였다. 이는 울산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조선의 전역에 귀화인들이 거주했다는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들이 증명한다. 울산지역과 다문화 인들과의 관계는 단지 조선시대의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일 뿐,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조건의 정책일 것이다.

조선의 왕조 정부는 귀화인들에게 신분과 경제적인 지원 정책을 조선인과 같은 조건이나 보다 더 나은 정책으로 이들을 정착하게 유도하였다. 특히, 17세기 전반 조선의 다문화인에 대한 정책은 후손에는 조선인과 다름없는 정책으로 이들을 포용했다. 남성에게는 조선 여성과의 혼인관계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후대에 더욱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은 다문화사회에서의 우리가 새겨야 할 정책적인 과제이다.

우리는 오랜 역사동안 단일문화를 유지하여 단일민족이라는 명분으로 5천년 역사 속에서 단군신화를 배경으로 한국사회를 일궈왔다. 하지만 한민족의 태생과정은 고조선과 고구려, 삼국시대를 이어 오면서 다문화 인들은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중앙정부의 정책들은 한민족이라는 명분으로 사회를 결집시키려 했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울산지역은 조선의 특별 관리지역인 삼포(三浦)지역은 다문화 인들이 다수 거주한 지역으로 특히 울산지역의 조선시대 다문화정책에 대하여 연구하고 기존의 연구를 재정립하여 현재의 다문화정책과 비교하는데 계기가 되고자 했다.

울산은 한국의 고도 경제 성장의 표본이기도 한 지역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1962년에 울산지역은 울산공업단지를 건설함에 따라 한국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성장한 지역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5대 광역

시 중에서 인구대비 다문화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문화 인에 대한 배려와 소수에 대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대의 칼럼(2019). 일제강점기와 대한제국 성씨에 대한 만행, 이데이 뉴스. 2019년 01월 21일자 기사.
- 강휘원(2007). 한국의 다문화사회 형성과 지방정부, <한국 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권 4호, 한국행정학회. 77쪽~96쪽.
- 경혜영(2013). 17세기 조선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병갑(2012). 다문화사회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다문화 연구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다문화정책의 방향 모색, <지방자치연구> 16권,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1쪽~41쪽.
- 곽효문(2012). 조선조 귀화정책의 사회 복지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30권, 한국행정사학회. 151쪽~177쪽.
- 김경록(2012). 조선초기 귀화정책(歸化政策)과 조명관계(朝明關係), <역사와 현실> 83호, 한국역사연구회. 213쪽~247쪽.
- 김근홍·김효정·송지원·김성현·허수연(2014). 경기도 다문화 가족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인식과 지원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경기도청.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명성(2009).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실천> 8권,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 5쪽~29쪽.
- 김비환(2007).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법철학연구> 10권 2호, 한

- 국법철학회. 317쪽~348쪽.
- 김언순(2007). 조선시대 교화(教化)의 성격과 사대부의 수신서(修身書) 보급, <한국문화연구> 13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7쪽~50쪽.
- 김원숙(2011).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의 역사 전개에 한 소고, <공법논총> 7권, 한국국가법학회. 75쪽~99쪽.
- 김태원(2010). 다문화현상에 대한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민족문화논총> 44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381쪽~423쪽.
- 김해성(2009). 다문화시대 사회통합의 기초와 의미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41권 4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31쪽~49쪽.
- 림학성(1990). 朝鮮時代 丹城縣 住民의 居住地移動에 관한 研究: 1678년도 丹城縣 戶籍大帳의 分析,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단(2009). 2005년 프랑스 ‘소묘사태’와 무슬림 이민자 통합문제, <프랑스사연구> 14호, 한국프랑스사학회. 225쪽~261쪽.
- 박옥걸(1996). 조선시대의 귀화인 연구, 국학자료원.
- 박진경·원숙연(2010).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정책 정향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4권 3호, 한국행정학회. 191쪽~217쪽.
- 박채복(2008). 한국이주자 사회통합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13권 1호, 한국동북아학회. 253쪽~274쪽.
- 설기환·박경란·박명혜·유석호(2018). 우리나라 다문화 현상의 효시로 본 백정신분 해방운동의 복합적 요인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6권 2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305쪽~312쪽.
- 신형석(2010). 역사속의 울산, 울산사람들 향화인 차별 불구 왜적 토벌 앞장선 향토인 조선시대 울산에 살았던 이방인, 경상일보 경상기획특집 2010년 3월 31일자(검색일 2019.01.20.일).
- 심보선(2007). 온정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과 변화: 한국의

- 다문화정책을 위한 시론적 분석, <담론201> 10권 2호, 한국 사회역사학회. 41쪽~76쪽.
- 심익섭·남영희(2015). 다문화정책 전달체계와 다문화역량이 다문화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가정책연구> 29권 1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53쪽~78쪽.
- 안혁근(2010). 『국격제고를 위한 소수자 정책 조정체계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엄정용(2002). 『己酉式年(1609)蔚山府戶籍大帳(기유식년(1609)울산부 호적대장)』 오월출판사.
- 유의정(2014). 다문화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다문화 법제: 한국과 서구의 정책·법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서양사학연구> 30호,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17쪽~244쪽.
- 원경렬(1995).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원숙연(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정책학회> 42권 3호, 한국행정학회. 29쪽~49쪽.
- 이상주·전미숙(2016). 국가 간 다문화정책 비교연구, <한국 인간복지실천연구> 16권, 한국 인간복지실천학회. 209쪽~235쪽.
- 이성순(2010).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1권 4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65쪽~187쪽.
- 이옥빈(2015). 조선시기 북방계 향화인의 구성과 존재양상: 1609년 울산호적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환·이병훈(2009). 조선후기 귀화 중국인에 대한 정책과 강릉 유씨 가경 2년 첩문, <민족문화논총> 40권, 민족문화연구소. 503쪽~533쪽.
- 이종열(2008). 다문화정책과 민주주의: 미국사례, 한국 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51쪽~65쪽.
- 이지홍·박현숙(2011). 다문화 관점에서 본 중학교 <역사(상)>교과

- 서의 '귀화인' 서술과 인식, <교과교육연구> 4권 2호, 고려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115쪽~137쪽.
- 이찬옥(2014). 한국의 귀화성씨와 다문화, <다문화콘텐츠연구> 17권,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53쪽~277쪽.
- 이현희(1966). 朝鮮前期 野人の 誘京綏懷政攷(조선전기 야인의 유경수회책고), 일산김두중박사 희수기념논문집발간위원회, 탐구당. 102쪽.
- 임동진·장우영(2012). 다문화정책의 집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권 2호, 정책분석평가학회. 95쪽~127쪽.
- 임성빈(2009). 조선초기 歸化人の 賜鄕과 특징, <東洋古典研究> 37권, 동양고전학회. 63쪽~91쪽.
- 임학성(2008). 17세기 전반 戶籍자료를 통해 본 귀화 野人の 조선에서의 생활 양상 -蔚山戶籍(1609)과 海南戶籍(1639)의 사례 분석, <고문서연구> 33권, 한국고문서학회. 95쪽~128쪽.
- 장진숙(2010). 다문화주의와 국민국가 통합정책 비교고찰: 캐나다와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1권 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97쪽~128쪽.
- 전영평(2008).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운동과 소수자 행정: 담론과 과제, <한국행정학보> 42권 3호, 한국행정학회. 9쪽~27쪽.
- 정광호·최슬기·장윤희(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과정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23권 4호, 한국공공관리학회. 231쪽~255쪽.
- 정명주(2010). 정책수단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특징: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권 2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75쪽~295쪽.
- 정상기(2009).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과적 운영방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 정석종(1972). 조선후기 사회신분제의 봉양-울산부호적대장(蔚山府

- 戶籍臺帳)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9권 3호, 대동문화연구원. 267쪽~373쪽.
- 정성영·박한솔·공동성(2014). 한국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 구조 변화 분석: 안산시 원곡동 사례를 중심으로, 2014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정장엽·정순관(2014).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 분석: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지방정부연구> 17권 4호, 한국지방정부학회. 121쪽~142쪽.
- 주성훈(2010).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주효진(2008). 아시아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 행정학회 추계 학술대회자료집.
- 지은실(2009). 『인적자원관리 용어사전』 한국학술정보.
- 차용호(2009). 이민정책과 통합정책의 관계성 및 연계방안 연구: 결혼이민자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3권 1호,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165쪽~200쪽.
- 천재교육(2015). 『고등동아시아사』, 출판사(주) 천재교육.
- 최무현(2008).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권 3호, 한국행정학회. 51쪽~78쪽.
- 최현실(2009).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한국 사회통합 정책 연구: 중국과 싱가포르의 상호성 원리의 한국 사회에 적용가능성, <한국민족문화> 35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343쪽~375쪽.
- 최홍엽(2018). 국제노동이주의 규율에 관한 최근의 논의, <노동법논총> 43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47쪽~284쪽.
- 한건수·설동훈(2007).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전28권)』 한

국정신문화연구원.

- 한승준(2009). 지자체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권 2호, 서울행정학회. 269쪽~291쪽.
- 한승준(2011). 다문화정책의 개념, 현황 및 과제, <The KAPs> 26권, 한국정책학회. 12쪽~17쪽.
- 홍기원(2007). 다문화사회의 정책과제와 방향: 문화정책의 역할과 과제, 한국 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자료집.
- 황교익(2002). 임진왜란 때 귀화한 왜장 후손들이 사는 대구 우록동-한 일본 무사의 유토피아, <지방행정> 51권 582호,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83쪽~87쪽.
- Berry, J. W.(2001). *Culture and Equality: An Egalitarian Critique of Multiculturalis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anding, K., & Kymlicka, W.(2006).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in Contemporary Democracies*. UK: *Oxford University Press*.
- Castles, S. & Miller, M. J.(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필자소개

성 명 : 신용일

소 속 :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박사 수료

전자우편 : yongilshin@naver.com

투고일: 2019. 7. 1 / 심사일: 2019. 8. 5 / 심사완료일: 2019. 8. 17